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결산 개요	1
1. 세입 결산	1
2. 세출 결산	2
가. 총 괄	2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2
다. 전용 내역	4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5
마. 불용 내역	6
3. 재무 결산	7
가. 재정상태표	7
나. 재정운영표	8
다. 순자산변동표	9
II. 검토의견	10
1. 총 괄	10
가.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비목 혼용 집행	10
나.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지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12

2.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15
가. 개 요	15
나. 노후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노력 필요	16
3.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20
가. 개 요	20
나. 전문상담위원제도 운영 전반적 점검 필요	21
4.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24
가. 개 요	24
나.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25
5. 국제교류협력(1036-300)	29
가. 개 요	29
나.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예산 조달방안 다각화 노력 필요 ...	30
6. 국내교류협력(1036-303)	34
가. 개 요	34
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5
7.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40

I.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0만원이고,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10만원을 수납함. 주요 수납 내역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금 160만원, 법원 확정결정 징수비용 2,100만원, 공무원 산재보험 대위수령 청구급여 1,4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B-A)	수 납 륜 (B/A*100)
합 계	27	43	31.1	11.9	72.3
□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8	1.8	-	100
- 기타재산수입	1	1.8	1.8	-	100
□ 과태료	5	-	-	-	-
- 과태료	5	-	-	-	-
□ 변상금 및 위약금	0	0.3	0.3	-	100
- 위약금	0	0.3	0.3	-	100
□ 기타경상이전 수입	20	40.5	28.6	11.9	70.6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40.5	28.6	11.9	70.6
□ 기타잡수입	1	0.4	0.4	-	100
- 기타 잡수입	1	0.4	0.4	-	1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 세출 결산

가. 총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10억 1,300만원으로, 이 중 393억 7,1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96.0%)하고, 3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5,700만원은 불용함.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등				
41,013	-	-	127	41,013	39,371	384	1,25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393억 7,100만원 중 인건비로 198억 7,200만원(총 집행액 중 50.5%), 기본경비로 88억 9,200만원(총 집행액 중 22.9%), 주요사업비로 106억 800만원(총 집행액 중 26.9%)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예산액 (추경)	예산 결정후 증감액			예 현 액	집 행 액	다 연 이 월 액	불 용 액
		전 년 이 월 액	도 안 액	전 용 등				
합 계	41,013	-	-	±127 ±359	41,013	39,371	384	1,257
□ 인 건 비	20,521	-	-	(-14) ±113	20,507	19,872	-	635
- 인 건 비[1001-100]	20,521	-	-	-14 ±113	20,507	19,872	-	635
□ 기본경비	9,301			74(-19) ±156	9,356	8,892	384	80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101-200]	2,175	-	-	14 -	2,188	2,124	-	65
-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7,126	-	-	42 ±43	7,167	6,768	384	15
□ 주요사업비	11,150			53(-94) ±203	11,150	10,608	-	542
인권의식 증진[1031-300]	949	-	-	20 ±60	969	957	-	12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189	-	-	±10	189	180	-	9
인권교육기획 및 운영[1032-301]	2,189	-	-	19 ±5	2,208	2,091	-	116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177	-	-	±4	167	140	-	27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	1,455			-30 ±85	1,435	1,329	-	106
장애인 인권증진[1033-302]	547	-	-	-	547	520	-	27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강화[1033-303]	234	-	-	-	234	220	-	14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1,611	-	-	-50 ±8	1,561	1,481	-	80
북한인권 개선[1034-303]	136	-	-	-	136	130	-	6
국제교류협력[1036-300]	1,697	-	-	±25	1,697	1,600	-	97
국내교류협력[1036-303]	254	-	-	±12 ±3	254	248	-	6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1037-500]	1,044	-	-	-	1,044	1,016	-	28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1037-501]	709	-	-	-	709	695	-	1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인권교육원 경비보안용역 재원 마련 1,800만원, 소송수임료 부족 재원 마련 6,000만원, 인권의날 기념식 행사 부족 재원 마련 2,0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 액	(~으로)		전용사유
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8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관리용역비 (210-15)	인권교육원 경비보안용역 재원 마련
국내교류협력 (1036-303)	일반수용비 (210-01)	6	국내교류협력 (1036-303)	국내여비 (220-01)	인권옹호자 관련 행사 참가자 여비 부족 재원 마련
	임차료 (210-07)	6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10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관리용역비 (210-15)	인권교육원 경비보안용역 재원 마련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033-300)	일반수용비 (210-01)	10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소송수임료 부족 재원 마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일반수용비 (210-01)	50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일반수용비 (210-01)	20	인권의식 증진 (1032-301)	일반용역비 (210-14)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부족 재원 마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일반수용비 (210-01)	3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국내여비 (220-01)	지역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인건비(총액) (1001-100)	보수 (110-01)	14	기본경비(총액) (1011-200)	고용부담금 (320-09)	고용부담금 부족 재원 마련
계		12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액은 3억 8,400만원으로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액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다음연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이월금액	이 월 사 유
합 계	384	
□ 기본경비	384	
- 기관운영 기본경비	384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 의거한 기본경비 이월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마. 불용 내역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2억 5,7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257	비목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인건비(총액)	635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65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15	집행잔액
인권의식 증진	12	집행잔액
지역인권문화 확산	9	집행잔액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16	①대상별교육과정 직접운영 13백만원 예산절감 ②연구용역비낙찰차액 23백만원,③인권교육센터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4.7백만원, ④집행잔액 등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7	화상채팅상담설비 보안취약 문제로 운영일시 중단,(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6.6백만원), 상담원교육 자체시설활용 등 예산절감
취약분야 인권개선	106	용역비 낙찰차액10백만원일반수용비54백만원, 임차료29백만원 등 집행잔액
장애인 인권증진	27	임차료4.8백만원 절감계약, 국외여비4백만원 환율하락에 따른 절감, 그 외 집행잔액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4	일반연구비 12백만원 낙찰차액, 그 외 집행잔액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80	일반연구비 35.8백만원 낙찰차액, 그 외 집행잔액
북한인권 개선	6	집행잔액
국제교류협력	97	APF연례회의 4회→2회로 계획 축소,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가 대면회의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예산 절감 95백만원, 그 외 집행잔액
국내교류협력	6	집행잔액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8	집행잔액
e-진정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4	집행잔액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23년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원($\Delta 0.3\%$) 감소하였고, 부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0원이며, 순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원($\Delta 0.3\%$) 감소함.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 산	22,894	22,965	$\Delta 71$	$\Delta 0.3$
- 유동자산	168	10	158	1,580
- 투자자산	21	0	21	순증
- 일반유형자산	17,498	17,792	$\Delta 294$	$\Delta 1.7$
- 무형자산	2,373	2,232	141	6.3
- 기타비유동자산	2,834	2,931	$\Delta 97$	$\Delta 3.3$
부 채	0	0	0	0
순자산(자산-부채)	22,894	22,965	$\Delta 71$	$\Delta 0.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도에는 유동자산 1억 5,800만원 증가, 투자자산 2,100만원 증가, 무형자산 1억 4,100만원 증가 등으로 순자산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일반유형자산 2억 9,400만원 감소, 기타비유동자산 9,700만원 감소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임.

나.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23년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결과는 426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련 이자 및 영화제작비용 산업재산권 등재 등에 따른 비배분수익이 4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임차료, 여비,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7억 3,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 액(C=A-B)	비 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43,115	42,385	730	1.7
II. 관리운영비			-	-
III. 비배분비용			-	-
IV. 비배분수익	452	2	450	22,50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42,663	42,383	280	0.7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42,663	42,383	280	0.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2023년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말순자산은 2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229억 6,500만원보다 7,100만원(△0.3%) 감소하였음.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229억 6,5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 426억 6,300만원을 차감한 후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6억 2,600만원을 가산하고 조정항목 △3,400만원을 반영한 금액임.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22,965	22,654	311	1.4
II. 재정운영결과	42,663	42,383	280	0.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626	42,727	△101	△0.2
IV. 조정항목	△34	△33	△1	△3.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2,894	22,965	△71	△0.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II. 검토의견

1. 총괄

가.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비목 혼용 집행

「국가재정법」 제45조¹⁾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각 비목별 적용대상 및 세부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목적과 비목별 적용대상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집행 사례가 발견됨.

구체적으로, 정수기 사용 요금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등에 적용되는 ‘일반수용비(210-10)’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특정 부서에서는 정수기 사용 요금을 토지·건물·시설·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등에 적용되는 ‘임차료(210-07)’에서 지급²⁾하고 있음.

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군인권보호국 및 부산인권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정수기 사용 요금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하였음.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2024년부터는 군인권보호국 및 부산인권사무소도 일반수용비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함.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

(단위: 원)

세부사업명	집행 부서	집행 비목	집행 내용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군인권보호국	임차료 (210-07)	1월~12월 정수기 사용 요금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부산인권사무소	임차료 (210-07)	1월~9월 정수기 사용 요금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이러한 예산 집행은 그 자체로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특정 부서만의 예산 집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세목간 조정이 예산 변경제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가 세출예산의 목적과 비목별 적용대상 등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등 예산 집행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동일 또는 유사 집행 내역에 대한 상이 비목 집행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지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국고금 관리법」 제22조³⁾ 및 제24조⁴⁾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하되,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관서운영경비)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음.

한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⁵⁾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⁶⁾와 관련 별지 제1호에 따르면, 운영비(210목) 중 임차료(210-07)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청사임차료는 금액 제한 없음)’에만, 유형자산(430목)은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음.

-
- 3)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 4)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5)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6)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②규칙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이에 따라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에 대하여 임차료(210-07)를 지급하거나 취득단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자산취득비(430-01)로 구입할 때에는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을 사례가 발견됨.⁷⁾ 이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고금 지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관서운영경비 미대상 지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사례]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일 자	집행 비목	집행 내용	집행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023. 4. 20.	임차료 (210-07)	제주인권팀 관사 임차료 등 지급요청	12,838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2023. 4. 4.	자산취득비 (430-01)	장애인 독서보조기기(컴퓨터 화면읽기 프로그램) 대금지급	98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등 예산 집행담당자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

7) 청사의 개념에 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착오로 인한 오집행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인권팀 관사는 2019. 9. 1.부터 임차로 운영됨.

법」 등 국고금 지출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가. 개 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사업은 인권 연수과정 운영,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인권도서관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 등으로 예산액보다 1,900만원 증가한 22억 800만원이며, 이 중 20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00만원(5.3%)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189	2,189	-	19	-	2,208	2,091	-	116	1,94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인권 연수과정 운영에 12억 7,100만원, ②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에 1억 5,100만원, ③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구축 및 국내외 협력에 9,600만원, ④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에 4억 8,000만원, ⑤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7,100만원, ⑥ 인권도서관 운영에 2,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노후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시민(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등)과 공무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교육 인원]

(단위: 명)

구 분	공직자		교 사		시 민		합 계	
	신 청	이 수	신 청	이 수	신 청	이 수	신 청	이 수
2019년	68,404	56,140	6,874	5,663	231,124	199,702	306,402	261,505
2020년	100,864	80,667	6,790	5,606	154,731	134,119	262,385	220,392
2021년	69,913	46,958	2,829	1,892	187,578	156,888	260,320	205,738
2022년	141,754	109,137	1,828	1,257	416,668	322,850	560,250	433,244
2023년	180,672	174,566	1,362	1,034	488,156	409,160	670,190	584,76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상·내용·수준별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콘텐츠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콘텐츠의 경우 최대 5년(3년 원칙)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마다 기존 콘텐츠에 대한 개정작업과 신규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고 있음.

2023년에는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차별 예방교육, ③ 보건사회정책과 건강권, ④ 기후위기와 인권이야기를 개발하였는데, ① 및 ②의 경우 2022년 실시한 콘텐츠 분석 결과, 콘텐츠 노후화로 인한 시의성 부족, 사실

오류 등으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황⁸⁾임에 따라 우선 제작한 것이고, ④의 경우 인권 현안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새로 제작한 것임.⁹⁾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내용]

(단위: 백만원)

집행액	개발 주요 내용
66	○ 모듈(module) 형태의 콘텐츠 3종 신규 개발 - <보건사회 정책과 건강권>,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 - 콘텐츠별 6차시, 러닝타임 1시간 30분 이상으로 구성 - 1인 강의형, 대담형, 지식다큐, 인포그래픽 등 최신 트렌드 반영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개 콘텐츠 중 2023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가 15개로 나타나고, 특히, 10년 전인 2013년 이전에 과정을 개시한 콘텐츠도 7개에 이르는 등 시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30개의 정규 콘텐츠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22개 콘텐츠를 선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차별 예방교육, ③ 스포츠와 인권, ④ 기업과 인권은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황임.

9)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성차별 예방교육, ③ 보건사회정책과 건강권 콘텐츠는 내용의 단계별 검토 및 모니터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2024년 5월 나라배움터 및 인권교육센터에 탑재하고 같은 해 하반기 최종 검수 후 과정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④ 기후위기와 인권이야기 콘텐츠는 2023년 11월에 과정을 개시하였다고 함.

[2023년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이수 현황]

연번	과정명	과정 개시일	이수 인원(명)
1	성차별예방교육	2006	12
2	인권의 이해	2006	2,598
3	신행정과 인권	2006	2,810
4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2010	983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2011	70
6	차별예방교육	2013	135,040
7	군인 인권의 이해	2013	1,720
8	학교폭력예방교육	2014	46
9	성희롱예방교육	2015	15
10	세계인권선언	2015	1,527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015	14,704
12	이주민과 인권	2015	510
13	노인 인권의 이해	2015	3,212
14	사회복지와 인권	2016	10,215
1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2017	1,448
16	기업과 인권	2019	42
17	인권경영의 이해	2020	59,145
18	인권의 이해(입문편)	2021	19,093
19	인권의 이해(권리구제편)	2021	38,015
20	노인 인권의이해 강좌	2021	2,805
21	알기쉬운 인권상담	2021	10,515
22	인권공부첫걸음	2021	36,149
23	차별금지의 이해_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2021	19,682
24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2021	10,106
25	코로나19 이후의 건강과 인권	2021	14,490
26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2021	35,578
27	사례로 보는 인권경영	2021	88,338
28	인권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2021	6,194
29	인권행정 ABC	2021	11,721
30	인권경영 국내외 동향	2023	42,551
31	노동인권(직장 내 괴롭힘)	2023	10,677
32	돌봄노동과 인권	2023	2,865
33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노인인권)	2023	902
34	인권이란(초등학교)	2023	87
35	초등학교 노동인권	2023	23

연번	과정명	과정 개시일	이수 인원(명)
36	초등학교 스포츠인권	2023	28
37	인권이란?(중학교)	2023	61
38	중학교 노동인권	2023	26
39	중학교 스포츠인권	2023	28
40	인권이란(고등학교)	2023	81
41	고등학교 노동인권	2023	199
42	고등학교 스포츠인권	2023	177
43	기후위기와 인권이야기	2023	272

주: 연번 1·9·16은 연구용역 결과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연번 1·9는 2023년에 개발하여 2024년 하반기 과정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번 16은 새로 개발되어 있지 않음. 2023년 개시한 과정(연번 43 제외)은 2022년에 개발한 콘텐츠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특히, 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군인 인권(2013년 과정 개시), 학교 폭력(2014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 ② 2017년 과정 개시 후 다섯 차례 법률이 개정된 장애인차별법 관련 콘텐츠와 ③ 2022년 실시한 콘텐츠 분석 결과 사용중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과 인권(2019년 과정 개시) 관련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시의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¹¹⁾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 확보 및 품질 제고와 인권분야별 적정 안배 등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콘텐츠 개정 및 신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0) 아울러, 과정 개시 시기가 오래된 콘텐츠의 이수 인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11)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콘텐츠 중 인권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의 이해는 2024년 개발 진행 중이며, 군인권의 이해는 2023년 ‘군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3.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가. 개 요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은 인권현장대응,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 등으로 예산액보다 1,000만원 감소한 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16.2%)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77	177	-	△10	-	167	140	-	27	42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전문상담원 및 상담위원 운영에 8,200만원, ② 인권현장 대응에 1,400만원, ③ CTI 전화시스템 운영에 4,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전문상담위원제도 운영 전반적 점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문상담위원제도(임기 2년)를 운영하고 있음.

전문상담위원은 ① 인권관련 단체 또는 현재 위촉 중인 전문상담위원이 추천한 사람, ②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서 적격자로 자체 판단하여 선정한 사람,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하는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변호사 13명, 노무사 10명, 군인권 전문가 2명, 수화통역 1명 등 총 26명이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최근 3년(2021년~2023년) 전문상담위원 현황]

구 분	변호사	노무사	군인권	수화 통역	계
2021년말 기준	13명	12명	2명	-	27명
2022년말 기준	14명	10명	2명	1명	27명
2023년말 기준	13명	10명	2명	1명	26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서비스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사례금 등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전문상담위원제도 효율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전문상담위원제도 효율화 방안(2022. 12. 28.)]

-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방문상담예약 신청란’을 배치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위원회 인권전문위원 방문상담제도 홍보 및 방문상담 예약이 용이하도록 개선
- 예약상담 신청자들에게 사전 전화하여 상담요지 확인하여 내용에 맞는 전문상담위원과 매칭
- 1331 전화상담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상담위원 예약상담제도 안내 및 홍보
- 사전 예약상담제 확대 시행, 교육과 모니터링 강화, 상담환경 개선 및 지원, 방문상담제도 홍보 등으로 전문상담위원 방문상담제도 활성화 도모

그런데,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문상담위원의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일수 및 상담건수 모두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문상담위원제도 효율화 방안 시행 전·후인 2022년과 2023년 상담 실적을 비교하면, 효율화 방안 시행 후 오히려 상담일수가 66일(△30%) 감소하였고 상담건수도 61건(△22.6%) 감소하였음.

[최근 3년(2021년~2023년) 전문상담위원 분야별 상담 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담일수	상담건수	상담일수	상담건수	상담일수	상담건수
변호사	84일	118건	83일	133건	42일	86건
노무사	178일	173건	107일	99건	73일	101건
군인권	43일	25건	27일	26건	9일	9건
이주	-	-	3일	-	6일	5건
수화통역	-	-	10일	12건	24일	8건
계	305일	316건	220일	270건	154일	209건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또한, 상담건수 감소에 비례하여 상담건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례비¹²⁾도 줄어들어 따라 2023년에는 사례비 예산 5,700만원 중 1,2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21.1%에 그치는 등 집행부진이 심각하였음.¹³⁾

[2023년 전문상담위원 사례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57	12	45

이와 같이, 상담 실적 감소 추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문상담위원제도 활성화 방안은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 이용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법률·노무·이주·군인권으로 단순화된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위촉) 분야에 아동·여성·노인·북한 인권 분야 등의 다양한 상담(위촉) 분야를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상담 실적을 제고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2) 사례비 지급 기준: 참석 1회당 80,000원

13) 2024년 예산에는 2023년 대비 1,900만원 감액되어 3,800만원이 편성됨.

14) 2020년 7월 이전에는 법률상담, 노동인권, 정신보건, 여성인권 및 성희롱, 북한인권, 인권일반, 군인권 분야로 나누어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변호사, 노무사, 군인권 등으로 전문상담위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4.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가. 개 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 인권 관련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하여 인권경영 관련 정책을 개발하며, 국가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국가인권통계를 생산·분석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용 등으로 예산액보다 5,000만원 감소한 15억 6,100만원이며, 이 중 14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5.1%)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611	1,611	-	△50	-	1,561	1,481	-	80	1,319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1,700만원, ② 인권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에 7억 4,800만원, ③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에 4,900만원, ④ 기업인권 정책개발에 6,900만원, ⑤ 국가인권통계 운영에 5억 9,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¹⁵⁾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¹⁶⁾은 12개의 전문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분야별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2023. 1. 16. 규칙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음.

한편, 2023년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회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였으며, 참석사례비 등 소요 경비(1,719만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사업에 이미 편성된 정보인권포럼 관련 예산¹⁷⁾에서 집행하였음.

-
-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1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

[2023년 정보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개최일 (장소)	주요 안건	예산집행내역(단위: 천원)
2023년 제1차 회의	2023. 3. 27. 전원위원회실	○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 계획 공유 ○ 전자장치 분리 후 도주자의 사건 공개 논의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인권 가이드라인 논의	○ 참석 사례비 2,400(200*12명) ○ 발제 사례비 400(1명) ○ 자료집 등 제작비 608 ○ 필요물품 구매 116 ○ 오찬비용 490
2023년 제2차 회의	2023. 6. 21. 전원위원회실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논의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논의	○ 참석 사례비 1,800(200*9명) ○ 발제 사례비 800(400*2명) ○ 자료집 등 제작비 529 ○ 필요물품 구입비 105
2023년 제3차 회의	2023. 10. 25.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명동점)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권고 초안 검토	○ 참석 사례비 2,200(200*11명) ○ 발제 사례비 400(1명) ○ 속기 사례비 420¹⁸⁾ ○ 자료집 등 제작비 628 ○ 필요물품 구입비 102 ○ 회의장 임차료 2,68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2023년 제4차 회의	2023. 12. 22. 전원위원회실	○ 2024년 정보인권 업무계획 보고 ○ 신규 정보인권 제안사항 검토	○ 참석 사례비 2,400(200*12명) ○ 자료집 등 제작비 632 ○ 필요물품 구입비 225 ○ 다과 등 25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17) 2023년 정보인권포럼 관련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내역
일반수용비	25,200	정보인권포럼, 실태조사(자료 인쇄 12,000 / 발표 및 토론 사례비 13,200)
임차료	4,000	정보인권포럼 운영(장소 임차)
합계	29,200	-

18) 속기 사례비는 제3차 회의에서만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속기 사례비는 회의 장소(내부 또는 외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되는 안건의 중요성, 즉 소관 위원회(상임위원회)의 정책안건 심의·의결 시 참고자료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속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운영 측면에서, 제3차 회의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였는데, 이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전신¹⁹⁾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인권포럼’이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하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임.²⁰⁾

그러나, 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사적 성격의 정보인권포럼과 달리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회의체로서 그 위상과 성격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정보인권전문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점, ③ 전문위원회는 발제자·토론자·청중 등을 위한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회의장소 임차로 인하여 임차료(286만원)가 추가로 지출되었음. 호텔 임차료의 경우 정보인권전문위원회 회의의 성격상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을 활용하였더라면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경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집행으로 보임.²¹⁾

19)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까지 정보인권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로 운영되던 정보인권포럼을 2023년부터 정보인권전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참고로, 2022년 정보인권포럼은 4차례 개최되었는데 3차례는 장소를 임차하여 개최되었고 1차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정보인권포럼과 정보인권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15명으로 동일하며 이 중 10명이 중복됨.

20)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 회의는 안전 검토의 적시성과 다수의 전문위원 참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 일시를 정하고, 해당일의 위원회 내부 회의실 사정을 살펴 회의장소의 임차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원회에서 정보인권전문위원회 회의가 가능한 규모의 회의실은 전원위원회 회의실, 중회의실, 배움터 등이 있으나, 정보인권전문위원회가 있던 날 모두 예약이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외부 장소를 임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힘.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를 운영하고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1) 참고로, 2024년 정보인권전문위원회 관련 예산에 임차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역
일반수용비	10,800	정보인권 전문위원회 운영 등(자료인쇄 2,000 / 발표 및 토론 사례비 8,800)
임차료	2,000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등(장소 임차)
합계	12,800	-

5. 국제교류협력(1036-300)

가. 개 요

「국제교류협력」사업은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려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16억 9,700만원이며, 이 중 16억 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5.7%)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국제교류협력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697	1,697	-	-	-	1,697	1,600	-	97	1,45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국제회의 참석에 4억 4,500만원, ②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에 2,300만원, ③ 인권현안 국제협력에 8,900만원, ④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에 2,400만원, 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활동지원에 1억원, ⑥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에 1,300만원, ⑦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에 6억 8,600만원, ⑧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소개에 2억 2,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예산 조달방안 다각화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ASEM)²²⁾ 회원국 노인들이 직면한 인권문제 해소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노인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음.

이에 2016년 7월 제11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노인인권 국제전문기구로 ‘ASEM 글로벌 에이징 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설치·운영을 승인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을 주도하여 2018년 6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를 서울에 개소하게 되었음. 아울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민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18년 1월 설립허가를 받았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① 노인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현안 분석 등 정책연구, ② 노인인권 관련 국내외 단체, 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③ 노인, 연령주의(ageism) 등 인식개선과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④ 노인인권 관련 정책, 보고서 및 주요 동향 등 노인인권 정보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협약서」²³⁾에 근거하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설립된 2018년 이후 해당

22)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함. 아시아 및 유럽정상, EU 집행위원장 과 ASEAN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51개 ASEM 회원국, EU 집행위원회 및 ASEAN 사무국(총 53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참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2년에 한 번꼴로 개최됨.

센터의 예산 전액을 국제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8년 5억 3,000만원을 지원한 이후 2023년까지 매년 6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국제부담금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530	686	686	686	686	68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23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부담금으로 지급한 6억 8,600만원을 인건비로 2억 9,900만원, 운영비로 2억 2,100만원, 사업비로 1억 6,400만원으로 각각 집행하였음.

[2023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집행률(B/A)
인건비	296,557	299,384	173	99.94%
운영비	221,443	221,443	-	100.00%
사업비	165,000	164,997	3	99.99%
합계	686,000	685,824	176	99.9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2018년에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설립된 이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프로젝트에

23)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지원 협약서」 제4조 :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정부예산 배정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센터에 지급한다. 다만,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 집행 저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있으나, 기관운영에 사용되는 국제부담금 등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재원조달이 된 경우는 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금에 운영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수업수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²⁴⁾

[2018년 이후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외부자금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협력기관	협력기관 예산	센터 예산
제4차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 (2019년 10월 개최)	유럽연합(EU)	30	-
G20보건부장관회의 부대행사 (2019년 10월 개최)	일본 외무성, 후생성, 유엔인구기금 등	80	-
디지털사회와 노인인권 국제세미나 (2019년 11월 개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13	3
아셈인권세미나 (2021년 2월 개최)	아시아유럽재단 (ASEF)	285	70
제1차 아셈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2021년 10월 개최)	유럽연합(EU)	7	93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 후속사업: ASEF 노인인권 위탁교육 (2021년 10월~11월)	아시아유럽재단 (ASEF)	42	-
합계		457	16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4)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유치를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국내교류협력(1036-303)

가. 개 요

「국내교류협력」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2억 5,400만원이며, 이 중 2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2.4%)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국내교류협력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54	254	-	15 △15	-	254	248	-	6	21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①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에 1억 8,400만원, ②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에 6,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인권 과제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교류협력(1036-303) 사업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179	179	174	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에는 총 16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단체별로 570만원에서 2,2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2023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반납
건강세상네트워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찾기 캠페인	15,000	915	15,915	-
고성가족상담소	영화로 만나는 인권이야기	5,700	300	6,000	-
구리YMCA	청소년 기후인권 동아리 ‘안녕, 초록씨’	5,700	300	6,000	1,224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반납
군인권센터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	18,000	1,000	19,000	220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2023 여성인권증진 연대활동 “페미니즘+@”	7,200	400	7,600	593
사단법인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나도 인권강사다’	11,800	630	12,430	-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공익제보자 자기 돌봄 강화와 심리적 적응 지원을 위한 집단치유프로그램	8,800	500	9,300	10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	갈등을 넘어 화해를 위한 한일 평화인권문화제: 100년을 향한 한걸음	22,000	4,800	26,800	-
연분홍치마	평등의 감각 연결하기 <당신과 나를 잇는 법>	11,500	720	12,220	-
원주기독교청년회	우리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기 제6회 원주인권박람회	6,300	400	6,700	1
이주와 인권연구소	기후정의를 위한 농·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6,200	350	6,550	-
인권운동연대	시민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통한 인권정책평가사업	14,000	800	14,800	100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주지역 중증 발달장애인 권리향상 프로젝트 ‘People first’	8,800	500	9,300	-
청년유니온	지역 청년 고용복지서비스 정책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교육사업	11,000	700	11,700	2,176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삶으로 새롭게 쓰는 성적 권리, 적극적 합의	10,500	580	11,080	-
환경정의	나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입니다 5인의 노동자와 함께 하는 폭염 동행기	16,500	870	17,370	7
계(16개 사업)		179,000	13,765	188,430	4,33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²⁵⁾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²⁶⁾ 시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국회 등으로부터 해당 보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부처가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즉 본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 부처가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것이 곧 해당 임무를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 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국회 지적]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0. 11.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산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2. 8.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2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2022. 11.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다양화할 필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1.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보완노력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있는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²⁷⁾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양경숙의원 대표발의로 민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23. 1. 6.)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²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²⁹⁾하고 이 중

27) 국가인권위원회 훈령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음.

28) 2024. 8. 13. 이재강의원 대표발의로 민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29) 2024. 5. 21. 및 5. 27. 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는데, 1건은 전문위원 채용 근거, 진정사건 처리결과 서면 송달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며, 1건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적 송달 등에 관한 내용임. 이 중 후자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은 2024. 7. 12.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1건을 제22대국회에 제출하면서도 민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개정법률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따라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해당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는데, 같은 법 제42조³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³¹⁾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³²⁾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정인의 권리구체 측면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진정사건의 조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접수 건수는 2019년 9건에서 2023년 36건으로 다소 증가하고 조정접수율은 2019년 0.09%에서 2023년 0.34%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극히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접수된 조정이 모두 각하³³⁾되어 실질적으로 조정이 이루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31)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현재 차별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3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3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조정신청 등의 각하) ①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
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접수된 조정이 모두 각하됨에 따라 같은 기간 조정위원회가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³⁴⁾

[최근 5년(2019년~2023년) 조정처리 현황]

(단위: 건, %)

연 도	진정 접수	조정 접수	조정 접수율	조 정 종 결			
				소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 하
2019년	9,768	9	0.09	9	1	1	7
2020년	9,017	6	0.07	6	2	3	1
2021년	10,035	14	0.14	14	-	-	14
2022년	10,582	13	0.12	13	-	-	13
2023년	10,745	36	0.34	36	-	-	3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제도 활성화 대책³⁵⁾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조정전문관 1명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배치하고 조정사건 업무 및 통계 관리, 조정사건 안내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과 안내·홍보만으로 조정제도를 실제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 보임.

34) 최근 5년(2019년~2023년)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구 분	합 계	차 별	성차별	장애차별	인권침해
2019	2	1	-	1	-
2020	5	2	2	-	1
2021	-	-	-	-	-
2022	-	-	-	-	-
2023	-	-	-	-	-
합계	7	3	2	1	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5) 조정제도 활성화 대책에 따른 활성화 방안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비용 절감 도모, 구제효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조정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 (전담 조정전문관 지명, 배치) 조사 경험이 많고 조정 역량이 있는 조정 전담 전문조사관을 고정 배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여건 조성
- (조정제도 안내 강화) 조정 친화적 사건 유형에 대하여 상담 및 진정 접수단계에서 위원회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 (SNS 안내 통지 신설) 진정사건 접수 시 진정인에게 송부되는 접수통지문에 조정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통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단독조정제 도입) 신속 조정사건, 경미한 사건, 원거리 지역 사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독조정제도 도입(법 제41조제3항 개정, 행정법무담당관에 의뢰)
 - (내부 조정위원 참여) 조정위원회의 신속한 개최와 안전검토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내부 위원 참여방안 마련(법 제41조제2항 개정 검토)
- (신청서류 간소화) 구술로 조정신청을 받은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소화 등을 위해 조정신청 의사 등이 포함된 전화조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규칙 제7조제4항)
- (홍보 강화) 조정 제도 안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위원회 게시판, 인권사무소,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 위원회 홈페이지(알림창) 및 지역 인권사무소 블로그 등 홍보 강화, 조사관을 위한 조정제도 매뉴얼 마련, 배포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